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의무화 〉

■ 이달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028호)

2022.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의무화	3
※ 참고자료	11
1.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지원내용	11
2. 보건복지부 아동발달계좌 지원 개요	12
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달곤 · 강민국 · 김학용 · 김영식 · 홍문표 · 권명호
이 용 · 구자근 · 박완수 · 김태호 · 김상훈 · 박대출
박대수 의원(13인)

나. 발 의 일 : 2022. 3. 31.

다. 회 부 일 : 2022.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3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쉽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의무화(안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개정안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 ① ----- ----- ----- -----이하 같다----- ----- ----- -----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

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은 가정 밖 청소년을 7일 이내로 보호하는 일시쉼터를 제외한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²⁾.

청소년쉼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³⁾, 개정안과 같이 법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시행일: 2022. 6. 22.]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에 사업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또한, 보호대상아동에게만 지원되고 있던 자산형성사업⁴⁾과 자립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선 **안 제32조의2**와 관련하여, 청소년쉼터에서 일시쉼터를 제외하면 현행법 제38조의 청소년쉼터에서도 일시쉼터가 제외되는데⁵⁾ 동일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는 일시쉼터를 포함한 청소년쉼터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32조의2** 개정 시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에서만 일시쉼터가 제외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임.

다음 **안 제32조의3**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쉼터 평균 입소기간을 살펴

3) <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경제지원	쉼터 입소 청소년의 자립활동비 지원(개소당 5백만원)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매월 30만원, 36개월)
주거지원	쉼터 퇴소 시 전세·매입·건설임대 주택 연계 지원
교육지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행복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
취업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회적 기업 특례대상에 쉼터 입·퇴소 청소년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1]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지원내용

4) [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 아동발달계좌 지원 개요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면, 2021년 기준 단기쉼터는 평균 45일, 중장기쉼터는 203일이며⁶⁾,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의 50%가 넘는 비율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타 시설로 연계되고 있음⁷⁾.

이에 따라 쉼터 입소기간이 짧은 경우와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등에도 개정안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를 퇴소한 18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입소기간과 퇴소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강행규정으로 되

6) < 쉼터 평균 입소기간 >

구분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보호 가능기간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9개월)	3년 이내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대 4년)
입소 평균기간*	45일	203일

* 2021년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입소기간 평균
자료: 여성가족부

7) < 단기·중장기쉼터 퇴소 인원 >

(단위 : 명)

구분	총계	기간만료 및 연계, 합의에 의한 퇴소								강제 및 무단퇴소			
		소계	가정 복귀	경제적 자립	기숙 (대안) 학교	타시설 연계	군입대, 입원등	보호 기간 만료	기타 퇴소	소계	법률형 집행	강제 퇴소	무단 퇴소
2018	7,797	7,235	4,584	178	86	719	702	143	823	562	85	134	343
2019	7,250	6,727	3,946	160	81	724	891	91	834	523	80	119	324
2020	4,962	4,636	2,804	127	48	570	365	74	648	326	49	92	185
2021	4,844	4,561	2,964	101	76	563	251	69	537	283	31	75	177

※ 일시쉼터는 일시보호 성격임을 감안하여 통계 추출 제외

* 비고 : 기타 퇴소 : 쉼터 담당자와 협의 후 퇴소

강제 퇴소 : 자기책임으로 인한 퇴소(쉼터 생활규칙 위반, 단체생활 문제 발생 등)

무단 퇴소 : 연락두절 등 담당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소

자료: 여성가족부

어 있는 지원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추가로 신설할 실익이 없고, 개정안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규정 시 국가·지자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임의규정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개정안 제32조의4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도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동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⁸⁾.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이 개정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⁹⁾.

8) [참고자료 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9) < 2021년 자립지원 관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수행 사업 >

이외에도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¹⁰⁾.

문 의 처
02)6788-5645

구분	사업명	사업성과
보조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 개발·보급 등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정책지원 기능 강화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문가 포럼 개최 등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례개입 전문가 솔루션 TF 운영

-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지원내용

단기/중장기쉼터			
단기/중장기쉼터 지원 요약			
NO	지원 구분	지원 내용	
1	보호 지원	- 식사 및 간식 제공 - 의복 및 개인물품 관리	- 주거환경 및 잠자리
2	일상생활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일상생활습관 형성
3	가정복귀 지원	- 가족상담 - 가족지원	- 귀가지원
4	자립생활 지원	- 퇴소 후 생활계획 - 안전한 보호처 마련	- 자립생활 준비 - 사회 적응 지원
5	교육 지원	- 학업유지 지원 - 학교복귀 지원	- 검정고시 및 상급학교 진학
6	직업 지원	- 진로탐색 및 발달 - 직업준비 및 취업연계	- 직장생활기술
7	법률 지원	- 법적 옹호 - 법률연계	- 법률행정 지원
8	의료 지원	- 건강검진 - 건강관리 - 질병치료	- 정신건강 - 성 건강
9	정서 지원	- 심리적 지지와 격려 - 개별상담	- 집단상담
10	문화여가 지원	-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종교활동 보장	- 지역사회 참여 -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11	자살예방 지원	- 자살위험 스크리닝 - 자살위험 청소년에 대한 대처	- 직원 대상 자살예방교육 - 외부 전문가의 도움 요청
12	멘토링 지원	- 준비단계 - 시작단계	- 실행단계 - 종결 및 평가단계

자료: 「청소년쉼터 운영매뉴얼」,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p.107.

[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 아동발달계좌 지원 개요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입소기간 :3개월 이내, 1회 연장),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 ※ 아동일시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아동 중 선정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 → 5만원)

(2) 추가 적립액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참고자료 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아동자립지원 관련 제도 총괄 · 아동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원, 운영 평가 ·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홍보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 아동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계획수립 업무 협조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업무 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실행 · 보호종료아동(중점사례관리 대상) 사후관리 ·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 만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 ·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 만 18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 위기대상은 중앙 및 시·도 전담기관 연계 · 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2」, 보건복지부, 2021, pp.6-7.